

규제입증위원회 운영규칙

제정 2021. 01. 19.

개정 2022. 04. 12.

개정 2024. 07. 30.

개정 2026. 07. 21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규제 관련 내규의 개선 또는 필요성 입증을 위한 규제입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4.12.>

제2조(설치) 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‘진흥원’ 이라 한다)은 규제 관련 내규의 개선 및 필요성 입증을 위한 규제입증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)를 둔다. <개정 2022.4.12.>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기존 규제 관련 내규의 존치 필요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
2.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성 내규의 심사에 관한 사항
3. 규제 관련 내규에 대한 자문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
4.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내외로 구성하되,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원장으로 하며, 내부위원은 상임감사 및 비상임이사, 본부장, 센터장, 실장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4.07.30.> <개정 2026.07.21.>

③ 외부위원은 규제의 영향을 받는 협회, 단체, 학계 등에 소속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위원회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

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

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사안이 시급하고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전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심의를 위한 자료를 회의 소집 통지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위원장은 안전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직원, 이해관계인 및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,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⑦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회 제척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상정된 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기타 해당 안전의 심의·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·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

의 결정을 한다.

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제8조(회의수당)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 및 외부전문가,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사후조치 등) 원장은 제6조의 규칙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내규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0조(비밀보호)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(2021.1.1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4.12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7.30.)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6.07.21.)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1> 위원회 소집 통보서 양식

위원회 소집 통보서

수신 : 전 위원

제 0회 규제입증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일 시 :
- 장 소 :
- 부의안건 :
 - 1.
 - 2.
- 기타사항

규제입증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개최를 통보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한국콘텐츠진흥원 규제입증위원회 위원장

<별지 2> 규제입증위원회 안건 자료 양식

규제입증위원회 안전

의안번호	제 호	의 결 안 건
보 고 일 자	. . . (제 회)	

안전명 : -----(안)

제 안 자	
제 안 일	. . .

제 호 의안 : -----(안)

1. 의결주문

2. 제안사유

3. 규제개요

- 관련 규정 :
- 규제 내용 :

4. 규제 존속여부 및 대안 검토

- 규제의 목적 및 배경
- 규제 존속 필요성
- 규제 대안 검토